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81
----------	-------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엄태영 · 권영진 · 이만희
안철수 · 윤한홍 · 이양수
서천호 · 이종배 · 김재섭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u>2026년 12월 31일</u> 이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 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 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 ③ (생 략)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 <u>2031년 12월 31일</u>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